

#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140
----------	------

발의연월일 : 2025년 8월 일

발 의 자 : 정혜영 의원

## 1. 제안이유

장애인 등이 하남시에 소재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경사로 설치 지원(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경사로 종류 및 설치(안 제5조)
- 라. 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6조)
- 마. 설치 및 정산(안 제7조)
- 바. 설치비용의 반환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및 제9조)
- 사.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하남시에 소재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에서 정한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

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설주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 · 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자: 하남시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서명 또는 인)

## 관계법령 발췌서

###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3. 20.] [대통령령 제34892호, 2024. 9. 19., 일부개정]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